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 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-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제한을 없애고,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이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
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업무

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 첫째,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, 둘째,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이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